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9,497,300,838	284,919,025
일 반 회 계	8,405,524,965	252,165,749
특 별 회 계	1,091,775,873	32,753,276
기 타 특 별 회 계	1,091,775,873	32,753,276
농 어 촌 주 택 사 업	4,729,698	141,891
의 료 급 여 기 금	670,197,051	20,105,912
동 부 권	36,000,000	1,080,000
학 교 용 지 부 담 금	6,186,860	185,606
소 방	374,083,225	11,222,497
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	579,039	17,37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45,702,516천원”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292,8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